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고영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11

발의연월일: 2020. 8. 31.

발 의 자:고영인・김진표・김승원

이용우 · 권칠승 · 이규민

강득구 · 김영호 · 강민정

강준현 · 홍정민 · 홍성국

오영환 · 전혜숙 · 인재근

이형석 • 서영석 • 최혜영

이상직 · 김민철 · 황운하

아 시네 사장 장상 사고 주영

김남국 · 김철민 · 임종성

유정주 • 김회재 • 민홍철

의원(3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안산시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태로 71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(제2급 감염병)이 확진되었고 이 중 17명은 합병증으로 용혈성요독증후군(HUS, 햄버거병)의 진단을 받았음.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늦은 신고로 사태가 악화됨.

현행법상 제1급~제3급 감염병은 신고의무자를 학교, 병원, 관공서 등으로 지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집단발병의 위험이 있고 감염에 취약한 유치원 등 관련자가

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감염병 발생 시 그 위험이 상당함.

이에 신고의무자에 유치원,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, 청소년시설,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,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제2호 중 "학교"를 "학교, 유치원·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, 청소년시설, 사회복지시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감염병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 ①	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 ① -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	
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	
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	
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	
우에는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	
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	
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	
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	
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학교</u> , 병원, 관공서, 회사, 공	2. 학교, 유치원·어린이집 등
연장, 예배장소, 선박·항공기·	영유아 보육시설, 청소년시
열차 등 운송수단, 각종 사무	<u>설, 사회복지시설</u>
소・사업소, 음식점, 숙박업	
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	
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	
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	
관리인, 경영자 또는 대표자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